

수원지방법원 2020. 5. 28 선고 2018가합18248(본소), 2019가합21203(반소) 판결  
[구상금 · 정산금 지급 청구]

---

## 전 문

**원고(반소피고)**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우

**피고(반소원고)**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용

**변론 종결**2020. 4. 16.

**판결 선고**2020. 5. 28.

## 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617  
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2. 피고(반소원고)들은 연대하여 원고(반소피고)에게 396,659,446원 및 이에 대하여  
피고(반소원고) B는 2018. 6. 29.부터, 피고(반소원고) C는 2018. 7. 2.부터 각 2019. 5. 31.까지는  
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(반소피고)의 피고(반소원고)들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(반소원고)들의  
원고(반소피고)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피고(반소원고)들이 부담한다.
5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본소: 주문 제1항 및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들은 연대하여 원고(반소원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 396,659,44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당사자들의 지위

- 1) 원고는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, D이 원고의 대표이사로, D의 부친인 E가 원고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, E가 원고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.
- 2) 피고 B는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F 토지1) 를, 피고 C는 분할 전 용인시 기흥구 G 토지2) 및 분할 전 H 토지3) 를 각 소유하고 있었던 자이다. I는 피고들의 형으로서 피고들로부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.
- 3) J은 피고들의 지인으로서 I와 함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.

#### 나. 이 사건 사업의 진행경과

- 1) 피고들은 2016. 7. 9. J의 아들인 K에게 위 분할 전 F, G, H 토지 중 일부(이하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를 분할하여 매매대금 합계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.
- 2) 이후 피고들은 위와 같은 토지의 매도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, 2016. 12.경 K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위 토지 지상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(이하 '이 사건 사업'이라고 한다)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피고들은 이

사건 각 토지를 출연하고, K는 공사대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조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.

3) 원고는 2016. 12. 1. 피고들과 이 사건 각 토지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고 한다)를 신축하는 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라고 한다)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4,440,000,000원, 공사기간은 2016. 12. 7.부터 2017. 10. 31.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(이하 '이 사건 도급계약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4)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인 2017. 1. 12. K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하고, K는 집합건물 건축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(이하 '이 사건 공동사업계약'이라고 한다)을 재차 체결하였는데, I와 J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체결과정에 입회하였다.

5)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, 2017. 11. 29.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.

#### **다. 이른바 '업계약서'의 작성 및 2,200,000,000원 반환약정의 체결**

1)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6,000,000,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.

2)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 피고들과,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토목공사, 지하주차장 공사, 시스템에어컨 공사,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대금을 반영하고, 피고들에게 부과될 소득세를 낮추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9,980,000,000원으로 부풀린 이른바 '업계약서'를 작성하되, '업계약서'상의 작성일은 2017. 3. 20.로 기재하기로 하였다.

3) 위와 같이 '업계약서'가 작성되자 그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할 세금 등을 감안하여, 원고는 위 '업계약서'를 작성할 무렵 피고들과,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'업계약서'상의 공사대금 9,980,000,000원을 지급받은 다음, 그 돈에서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와 원고가 부담하게 될 각종 세금이나 관리비, 공사 마진 등을 공제한 나머지 2,200,000,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(이하 '이 사건 약정'이라고 한다)을 체결하였다.

#### **라. 원고의 J, I에 대한 금원의 지급**

1) 원고는 2017. 12. 19.경부터 같은 달 29.까지 사이에 아래 지급내역표(이하 '이 사건 지급내역표'라고 한다) 상대방란 기재 각 상대방에게 같은 표 순번 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1,700,000,000원을 송금하였다.

2) 원고는 2018. 1. 10.경부터 같은 달 19.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5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합계 500,000,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하였다.

[이 사건 지급내역표]

|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|
| 1  | 2017. 12. 19. | O   | 650,000,000 | 수표로 지급 |
| 2  | 2017. 12. 20. | O   | 150,000,000 |        |
| 3  | 2017. 12. 20. | J   | 400,000,000 |        |
| 4  | 2017. 12. 29. | P   | 500,000,000 |        |
| 소계 | 1,700,000,000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|
| 5  | 2018. 1. 10.  | 피고들 | 100,000,000 |        |
| 6  | 2018. 1. 11.  | 피고들 | 100,000,000 |        |
| 7  | 2018. 1. 15.  | 피고들 | 90,000,000  |        |
| 8  | 2018. 1. 19.  | 피고들 | 210,000,000 |        |
| 소계 | 500,000,000  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|
| 합계 | 2,200,000,000 |     |             |        |

#### 마. 원고의 이 사건 각 비용 대납

1)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17. 3. 3. 주식회사 Q 앞으로 같은 날 신탁(이하 '이 사건 신탁약정'이라고 한다)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, 원고와 피고들 및 주식회사 Q은 2017. 12.경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사무처리비용 347,649,446원을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에 유보하고 비용을 정산한 뒤 이 사건 신탁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사업 정산합의를 하였다. 원고는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들을 대신하여 2017. 12. 19.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347,649,446원(=

280,227,000원 + 67,422,446원, 이하 '이 사건 ① 비용'이라고 한다)을 송금하였다.

2) 피고들은 2017. 1. 3. R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R이 피고들에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(Project Financing)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R에게 62,000,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2017. 12. 29. R에게 위 자문계약에 따른 보수로 29,010,000원(이하 '이 사건 ② 비용'이라고 한다)을 지급하였다.

3) 원고는 2018. 1. 8. 주식회사 Q에게, 피고들이 이 사건 신탁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신탁보수 20,000,000원(이하 '이 사건 ③ 비용'이라고 하고, 이 사건 ①, ②, ③비용을 합하여 '이 사건 각 비용'이라고 한다)을 피고들 대신 지급하였다.

#### **바.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결정**

피고들은 2019. 1. 14.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카단106617호로(이하 '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'이라고 한다), 청구채권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각 350,000,000원 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S에 대하여 가지는 제주시 T건물 U호 외 7개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.

#### **사. 피고들과 I 사이의 채권양도약정**

피고들은 2020. 1. 7. I에게,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 채권 중 합계 1,000,000,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약정을 체결하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갑 제8호증의 2, 3, 갑 제10 내지 12호증, 갑 제24호증의 1, 2, 갑 제25호증, 갑 제28호증의 6, 을 제1, 19호증, 을 제25호증의 1, 2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# **2.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**

#### **가. 이 사건 각 비용의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**

1)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6. 12.경 내지 2017. 1. 12.경 K와 체결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의한 피고들 및 K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(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조합체를 '이 사건 조합'이라고 한다), 피고들 및 K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이 사건 사업을 하는 것은

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하여 영업으로 부동산의 매매를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46조 제1호에 규정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한다. 그런데, 원고는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비용 합계 396,659,446원(= 이 사건 ① 비용 347,649,446원 + 이 사건 ② 비용 29,010,000원 + 이 사건 ③ 비용 20,000,000원)을 피고들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는바,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396,659,4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2)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) 피고들의 주장

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약 9,980,000,000원 중 2,200,000,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돌려받기로 하면서, 원고가 피고들 대신 지급한 이 사건 각 비용은 원고가 지급받은 7,780,000,000원(= 9,980,000,000원 - 2,200,000,000원)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

## 나) 판단

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산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. 오히려 앞서 든 증거, 갑 제9호증, 갑 제30호증의 3, 갑 제31, 32호증,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1,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, 원고는 2016. 12. 8.경부터 2018. 1. 8.경까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9,981,552,209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,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9,980,000,000원으로 부풀릴 경우 수급인인 원고는 법인세 등 세금과 경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, 원고가 투입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를 약 5,800,000,000원으로,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1,980,000,000원으로 산정하여 위 합계 7,780,000,000원(= 5,800,000,000원 + 1,980,000,000원)을 제외한 나머지 2,200,000,000원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,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비용을 포함한 400,685,446원5) 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입출금내역표(을 제8호증, 이하 '이 사건 입출금내역표'라고 한다)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교부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대납한 이

사건 각 비용 합계 396,659,446원을 7,780,000,000원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.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#### **나.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판단**

1)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의 발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9,980,000,000원에서 7,780,000,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,200,000,000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합계 2,200,000,000원의 정산금 채권(이하 '이 사건 정산금 채권'이라고 한다)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.

2) 원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) 당사자들의 주장

(1)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7. 12. 19.부터 2018. 1. 19.경까지 피고들 및 J, O, P(이하 'J 등'이라고 한다)에게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정산금 2,200,000,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, J 등에 대한 지급은 피고들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있으므로, 피고들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.

(2) 피고들의 주장

① 원고가 2017. 12. 19.부터 같은 달 29.까지 J 등에게 교부한 1,700,000,000원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원고와 J 등과 사이에 체결한 제주시 V 지상 집합건물 신축공사 사업(이하 '이 사건 제주도 사업'이라고 한다)에 관하여 교부된 것이어서,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과는 무관하다. ② J 등에게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교부받을 변제수령권이 없다.

나) 판단

피고들은 2018. 1. 10.부터 같은 달 19.경까지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5 내지 8항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,000,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, J 등이 지급받은 나머지 1,700,000,000원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.

살피건대, 앞서 든 증거,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, 갑 제16호증, 갑 제17호증의 1, 2, 갑 제18 내지

22호증, 갑 제28호증의 1 내지 5, 갑 제30호증의 1 내지 3, 갑 제34호증, 을 제3 내지 5, 8호증, 을 제14호증의 1,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, 피고들은 원고가 2017. 12. 19.부터 같은 달 29.까지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지급한 1,700,000,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결국 피고들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.

①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, 2항 기재 각 금원과 관련하여, 원고는 2016. 12. 5. J의 사위인 O와 이 사건 제주도사업에 관하여 O로부터 800,000,000원을 투자받고, 이후 투자이익금 800,000,000원을 더하여 합계 1,600,000,000원(투자원금 800,000,000원 + 이익금 800,000,000원)을 O에게 반환하기로 약정(이하 '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'이라고 한다)하면서,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W 2016년 등부 제3946호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. 원고는 2017. 1. 20.경부터 같은 해 6. 23.경까지 J 등에게 합계 550,000,000원을 교부한 다음(이를 다투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 법원의 주식회사 X, 주식회사 Y, Z조합신본지점, AA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), 2017. 7. 20. J과 사이에 투자원금 잔액 250,000,000원(= 800,000,000원 - 550,000,000원)에 관하여 공증인가 AB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368호로, 투자이익금 800,000,000원 중 400,000,000원에 관하여 공증인가 AB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369호로, 위 각 투자원금 250,000,000원과 이익금 400,000,000원을 원고가 J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. 이후 원고는 2017. 7. 27.경부터 같은 해 11. 15.경까지 O, AC, AD(J의 딸)에게 합계 250,000,000원을 추가로 교부한 다음, O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영수증과, J으로부터 이 사건 제주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투자이익금에 관하여 작성한 공증인가 AB법무법인 2017년 증서 제369호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남아있지 않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각 교부받았다.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이 사건 제주도사업과 관련하여 J 내지 O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2017. 12. 19. 이전에 소멸하였고, 원고가 2017. 12. 19. 이후 J 등에게 교부한 금원은 이 사건 제주도사업이 아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.

②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4항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, 원고는 2017. 12. 29. P와, P가 500,000,000원을 원고로부터 약정이자 3%, 변제기 2018. 12. 28.로 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, 위 차용증 작성 당일인 2017. 12. 29. 원고와 P 및 K 사이의 이메일(갑 제22호증)에 원고가 P에게 대여한 위 500,000,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2018. 12. 28.자 완불확인서가 위 차용증과 함께 작성되어 편철된 점에 비추어 보면, 원고와 P 사이에 별도의 대여계약에 의하여 500,000,000원이 교부되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, 위 500,000,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P에게 교부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. 더구나 P는 위 500,000,000원을 2018. 1. 5. J에게 송금하였고, J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위 500,000,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6).

③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입출금내역표(을 제8호증)에는 원고가 2017. 12. 19. 피고들로부터 송금받은 2,576,587,883원7) 에서 2017. 12. 19.부터 같은 달 29.까지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1 내지 4항 각 기재와 같이 J 등에게 합계 1,700,000,000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,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 순번 5 내지 8항 각 기재 합계 500,000,000원에 대한 교부내용 또한 함께 기재되어 있다. 또한 위와 같은 원고의 금원 교부에 대해서 피고들 및 I는 원고에게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이 사건 입출금내역표에 기재된 원고의 금원 지급내역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, 이에 반하는 을 제6호증의 1, 을 제7호증의 1, 을 제16, 17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.

④ J은 피고들의 지인으로서,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받은 피고들의 형 I와 함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. J은 K를 내세워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, 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원고의 주식회사 Q에 대한 공사대금 등 자금집행요청서의 피고들 이름 옆에 피고들의 도장을 날인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 또한, 원고의 사실상 운영자인 E와 I 및 J은 수원시 영통구 소재 J의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9,980,000,000원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'업계약서'의 작성과 그로 인한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8). 위와 같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J의 지위와 역할,

J이 이 사건 약정의 체결에 직접 관여하기도 한 점, K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J은 위 K를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, 원고로서는 J과 J의 사위인 O 및 P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, 원고가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J 등에 대한 변제는 민법 제470조에 따라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. 설령 원고가 J 등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,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입출금내역표를 교부하였고, 위 입출금내역표에는 원고의 J 등에 대한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, 피고들은 위 입출금내역표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,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정산금 채무의 변제를 사후에 유효한 것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.

#### **다. 소결론**

따라서, 이 사건 가압류 신청사건의 청구채권으로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위 청구채권에 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.

또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6,659,44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. 6. 29.부터, 피고 C는 같은 2018. 7. 2.부터 각 2019. 5. 31.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) 제2조 제2항,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이 정한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(2019. 5. 21.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)에 따라 2019. 6. 1. 이후부터 연 12%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).

### **3.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**

#### **가. 피고들의 주장**

피고들은 원고와,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9,980,000,000원 중 2,200,000,000원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,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500,000,000원을 반환받았고, 원고가 I에게 지급한 1,000,000,000원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, 피고들은 결국 원고로부터 700,000,000원(= 2,200,000,000원 - 1,500,000,000원)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350,000,000원(= 700,000,000원 ÷ 2)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 나. 판단

위 2.의 나.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700,000,000원의 정산금 채무는 원고의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그 정산금 채무가 남아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.

## 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판사안승호

판사정승혜

판사노용준

1) F 토지는 2017. 2. 7. 용인시 기흥구 F 답 1188m<sup>2</sup>(이하 'F 토지'라고 한다)와 L 답 470m<sup>2</sup>로 분할등기 되었다.

2) G 토지는 2017. 2. 7. 용인시 기흥구 G 답 1260m<sup>2</sup>(이하 'G 토지'라고 한다)와 M 답 228m<sup>2</sup>로 분할등기 되었다.

3) H 토지는 2017. 2. 7. 용인시 기흥구 H 전 1067m<sup>2</sup>와 N 전 858m<sup>2</sup>(이하 'N 토지'라고 한다)로 분할등기 되었다.

4) 이 사건 각 토지는 F 토지, G 토지, N 토지로 구성되어 있다.

5) = 이 사건 ① 비용 347,649,446원 + 이 사건 ② 비용을 30,000,000원으로 계산 + 이 사건 ③

비용 20,000,000원 + '통대출 수수료 소득세' 3,036,000원

6) J의 사실확인서(을 제9호증의 1) 참조.

7) 위 2,576,587,883원은 피고 C가 AE조합 및 AF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

9,156,470,600원에서 주식회사 AG, 주식회사 AH에 대한 피고 C의 기존 대출금 채무 등 피고들의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다(갑 제30호증의 1 내지 3, 을 제26, 27 참조).

8) J은 수사기관 조사시 E에게 피고들에게 발생할 소득세를 줄일 방안이 있는지 물어보았고, E가 이른바 '업계약서'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(갑 제28호증의 2, 38, 39쪽 참조).